

[별 표] <신설 2000.7.27>

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(제27조의2관련)

번 호	산출사용료의 증 가 율	납 부 할 사 용 료
1	10퍼센트 이상 ~ 2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+[전년도사용료×{10/100 +(증가율-10/100)×300/1,000}]
2	20퍼센트 이상 ~ 5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+[전년도사용료×{13/100 +(증가율-20/100)×100/1,000}]
3	50퍼센트 이상 ~ 10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+[전년도사용료×{16/100 +(증가율-50/100)×60/1,000}]
4	100퍼센트 이상 ~ 20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+[전년도사용료×{19/100 +(증가율-100/100)×30/1,000}]
5	200퍼센트 이상 ~ 500퍼센트 미만	전년도사용료+[전년도사용료×{22/100 +(증가율-200/100)×10/1,000}]
6	500퍼센트 이상	전년도사용료+[전년도사용료×{25/100 +(증가율-500/100)×5/1,000}]